

등록번호	재무과-11522
등록일자	2015.7.30.
결재일자	2015.7.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김향희	최승로	김순희	박진석	전결 07/30 황치영
협조	계약팀장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문애숙 권순우		

2015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지출) 집행 추진계획

서울의 중심
중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2015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지출) 집행 추진계획

출납폐쇄 기한 단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말 예산집행의 쏠림현상과 이월예산을 최소화 하고자 예산(지출)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I 추진 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 (14.5.28.)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연말 지출업무 처리시 큰 혼란이 예상됨
- 자치단체의 원활한 지출 및 결산업무 처리를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제시 필요

II 추진 개요

■ 출납폐쇄기한 단축

출납폐쇄기한 : 다음해 2.28. → 회계연도 12.31.

- ▶ 근거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 주요 달라진 점

- ▶ 공사·용역·물품계약·일반지출
 - 변경전 : 12.31까지 지출원인행위 후 다음해 2.28.까지 지출
 - 변경후 : 2015년부터는 12.31.까지 지출완료
- ▶ 세입금 : 다음해 1.20일까지 금고납입
- ▶ 일상경비 : 다음해 1.15일까지 잔액 반납
- ▶ 세입·세출의 출납사무의 완결 : 다음해 2월 10일까지

【비교표】

구분	출납폐쇄 기한	출납정리 기한	출납사무 완결 기한	결산안 작성, 결산검사신청	결산검사 완료
변경 전	다음해 2월말	다음해 3.10.	다음해 3월말	다음해 5.19	다음해 6.20
변경 후	회계연도 12.31	세입금 납입 : 다음해 1.20 일상경비 반납 : 다음해 1.15	다음해 2.10	다음해 3.20	다음해 4.20

■ 예상되는 문제점

- ▶ 연도말 예산집행 쏠림 현상으로 인한 각 부서 혼란 우려
- ▶ 기한 단축으로 사업부서의 불용예산 증가 우려
- ▶ 기한단축으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의 대량 이월 예상과 이에 따른 불용예산 증가 우려
- ▶ 기한에 임박한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지연에 따른 집행 문제
- ▶ 기타 12월분 신용카드 대금지급, 기타 경비(공공요금, 임금 등)의 정산문제 등

Ⅲ 주요업무 처리요령

1 재정집행 분야

■ 추진개요

- 대 상 : 일반회계 · 특별회계 예산현액(이월액 포함)
- 기 간 : 2015. 8. ~ 12. ※ 2015년 11월말까지 중점추진
- 목 표 치 : 연말기준 예산집행률 80.1%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목표(B)	집행률(B/A)	現 집행액 (7.27. 기준)
계(A)	일반회계	특별회계			
398,407	310,137	88,270	319,124	80.1%	161,798 (40.6%)

■ 추진내용

① 집행간소화 제도를 활용한 하반기 신속한 재정 집행

구 분	내 용
· 긴급입찰제도 활용	·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은 입찰 시, 긴급입찰 (7~40일 → 5일)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적격심사 기간 단축	· 적격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 소액사업 수의계약 활용	· 소규모 사업 중 신속한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제도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보조사업 보조금 우선집행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차수계약 등을 통해 국비 및 시·도비 우선 집행 ※ 단, 보조금 교부 신청·입금 확인·정산 등에 적정 필요

- ▶ 집행 간소화 제도를 활용, 사업 적기시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11.30일까지 조기 집행
- ▶ 국·시비 보조사업(시비 재배정 포함)의 경우, 필요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 ▶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관련, 필요예산의 불용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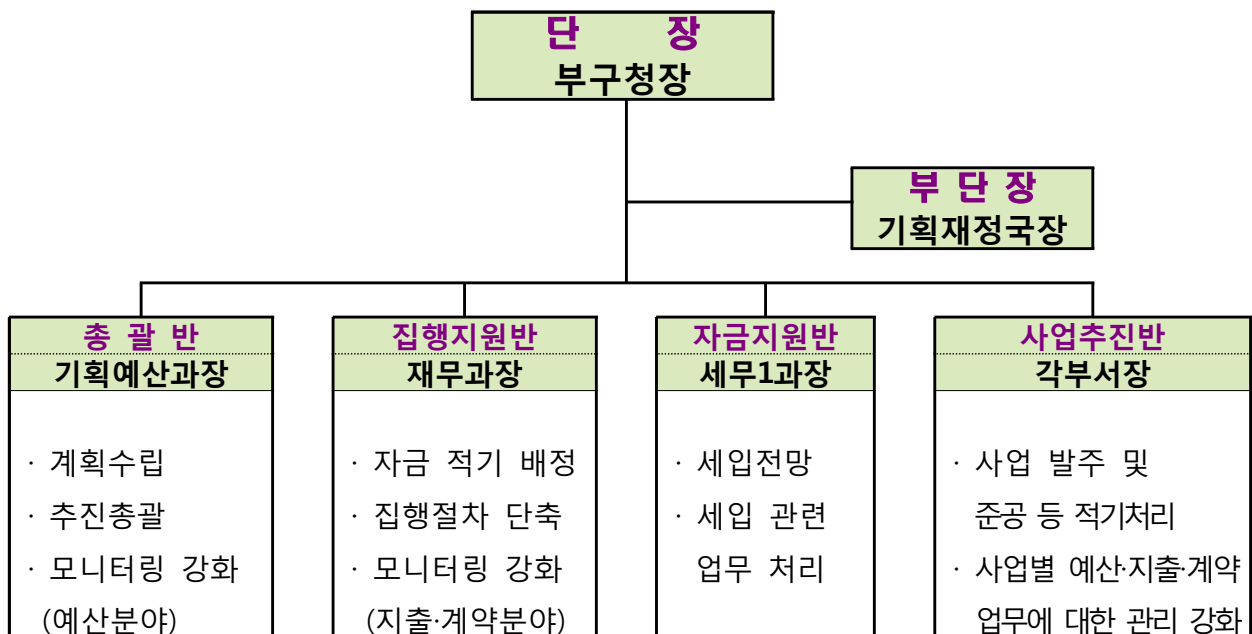
②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처리

- ▶ 각 부서에서는 출납폐쇄 기한단축에 따른 보조금의 조기 교부를 해당 부처에 요청
- ▶ 최종 정리추경 편성 조기 추진 : 2015. 12월이전 (기획예산과)
 -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에 한해 편성, 불가시 이월 처리
- ▶ 예산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또는 사·도비 보조금 중 최종 정리추경 편성(12월)시까지 자금교부가 안된 경우로서
- ▶ 다음해에 교부가 확실한 경우 “자금 없는 이월” 조치하고, 자금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예산 삭감조치
- ▶ 최종 정리추경시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자금교부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예산총칙에 명시하여 “간주처리”

【부서별 조치사항】

- (사업부서) 각 보조금 소관 중앙부처 및 시와 협의시 연내 집행이 가능 하도록 조기 보조금 교부 요구
- (예산부서) 조기 예산편성,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자금교부가 안된 보조금에 대해 “자금없는 이월”또는“예산삭감” 등 조치

③ 재정집행추진단 구성·운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 **추진내용**

① **계약의 체결 및 이월**

- ▶ 발주예정 사업 연말까지 대금 지급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약체결
- ▶ 연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15년에 한해, 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 ▶ 가급적 사고이월보다는 사전 이월수요 파악후 명시이월 조치

②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 ▶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예산확정 전이라도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 ※ 사업예시 : 청소, 시설관리용역,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 확정전의 계약>
- ▶ 부득이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 선정 시까지 1개월 미만의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 연장 검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 전에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입찰공고, 평가 등 사전절차를 진행
- ▶ 다만, 입찰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고문(수의계약은 계약서)에 명시 필요
- ▶ 계약체결까지 장시일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등 조기발주 필요

■ 세부추진 일정

연번	구 분	마 감 기 한	비 고
1	조달(청)계약 요청	2015.11. 6. (금)	조달청 사정에 따라 기한변동
2	입찰공고계약 요청 (공사,용역,물품)	2015.11.13.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최소기한 30일 소요 ※ 긴급일 경우 25일 소요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정가격 1억 이상은 40일 - 추정가격 1억 미만은 30일 ※ 2015년 예산 중 계약기간이 2015년 12월31일 까지이며 연도 말 까지 이행완료 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의회 승인받아 명시이월 조치 .
3	수의계약 요청 (전자공개수의계약 포함)	2015.11.20. (금)	
4	조달물품 구매 (3자단가계약-종합쇼핑몰)	2015.11.27. (금)	
5	설계변경,납품(준공)기한 연기	2015.11.27. (금)	

※ 모든 계약발주는 11월말 까지 요청완료 하여야 함. 12월 발주요청 절대불가

■ 부서별 추진사항

부서구분	계약의 체결 및 이월	중단할수 없는 사업의 계약체결
사업부서	사업 조기발주, 사업진행 상황점검 (10월),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월 요구	청소, 유지보수 등 소관부서에서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다음해 계약 체결 방법 검토 및 준비(10월)
예산부서	각 사업부서로부터 이월신청을 받아,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조치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을 위한 잠정예산안 통보
계약심사·계약부서	발주사업의 계약기간 적정성 검토, 사업내용에 따라 긴급입찰 등 적절한 계약방법 선택하여 절차단축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수의 계약의 발주사유 및 기간 등 적정성 검토·지원(12월)

■ 12월분 카드대금 및 공공요금 납부

- ▶ 12월말 지출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부서별로 지출업무 처리기한을 숙지하여 지출 누락지연되지 않도록 유의
 - 사업부서 품의 및 지출요구 기한 등
 - 신용카드 사용대금, 공공요금 등 12월에 발생하는 채무 중 다음해 1월에 지출해야 되는 경비 등
- ▶ 12월분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원인행위(결제) 후 반드시 **익일 입금 원칙**
- ▶ 12월말 지출업무 폭주예상으로 사업부서 품의 및 지출요구등 기한 설정
 - ▶▶ 12월분 신용카드 사용일 기한 지정 : 2015.12.24.(한)
- ▶ 12월분 신용카드 사용대금 청구일 도래 전에 카드사에 결제예정내역 확인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先知출**
- ▶ 12.31.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된 건 중 12.31.까지 청구되지 않은 건의 결제 예상금액은 지출원에게 반납하지 않고,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남겨두어 다음해 청구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조치
- ▶ 12월분 공공요금 등 계약 외의 경비 중 청구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지난 회계연도 지출”(「지방재정법」 제76조)로 처리

제76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지출액은 그 경비가 속한 회계연도의 각 정책사업의 금액 중 불용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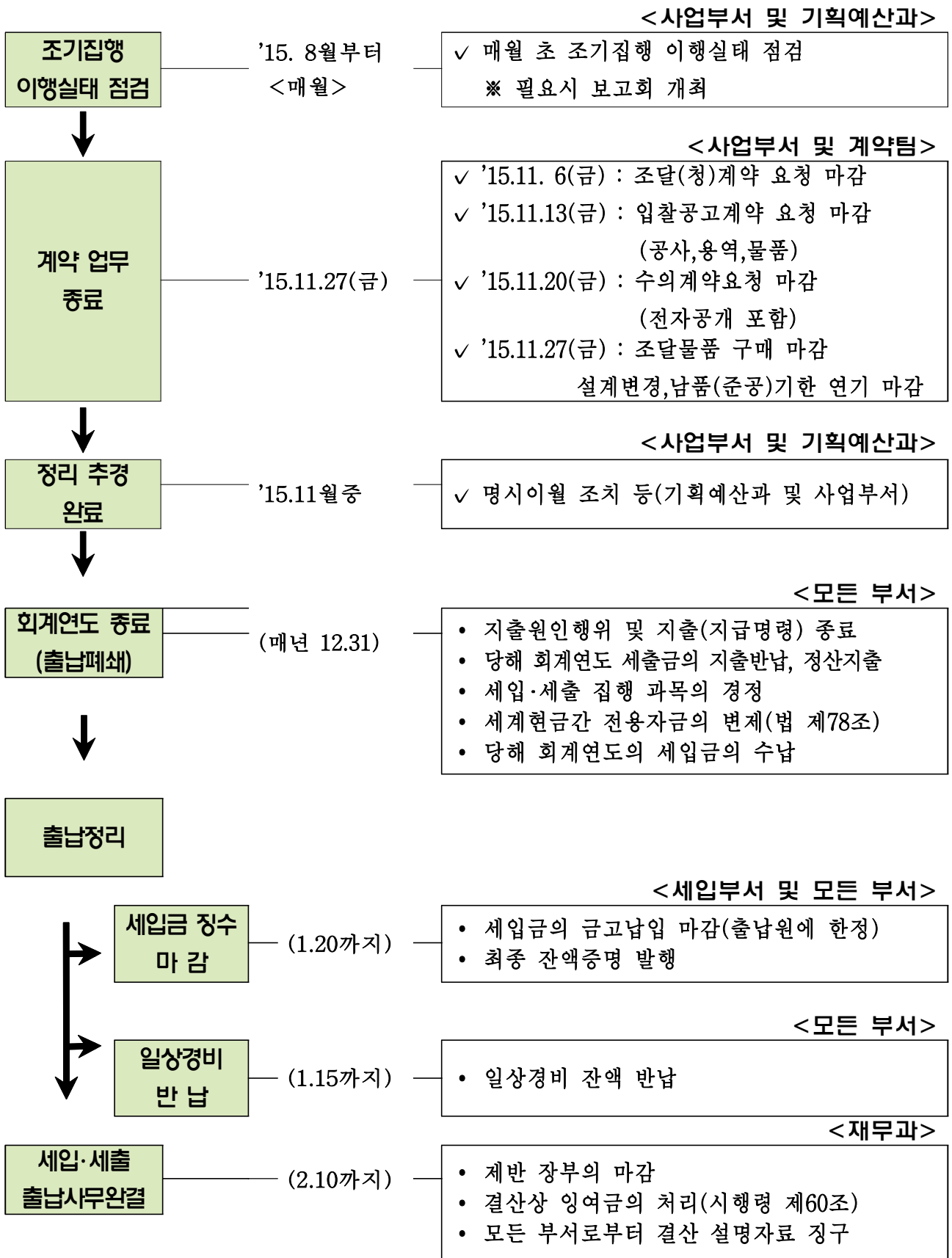
■ 월별로 지출하는 경비의 처리 방법

- ▶ 계약에 의한 경비 외의 경비인 경우 지난 회계연도 지출로 처리
- ▶ 포상금 등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경비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예산팀)등과 협의하여 이월 등을 통하여 집행

■ 보조금 사업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12월분 지출방법 검토 (연내 집행 또는 이월) 및 준비 - 전부서

IV

출납사무 처리절차 총괄표



V

행정 사항

- 출납폐쇄기한 단축을 감안, 각 부서 소관사업의 적기 발주 및 준공- 전부서
- 국·시비 보조사업(시비 재배정 포함) 예산 관리 철저(필요예산의 불용방지) -전부서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대상사업 적기 제출(→기획예산과) 등 - 전부서
- 예산집행실적 저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1억원 이상 147개 시책사업)- 기획예산과
- (필요시) 재정집행 추진상황 대책회의 실시 등 - 기획예산과
- 출납폐쇄기한 단축과 관련, 지출 및 계약분야 모니터링 강화 등 - 재무과
- 하반기 재정집행에 따른 세입전망 및 세입 관련 업무처리 - 세무1과
-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전직원 교육 - 2015.8. 4(화) 15:00 (재무과)

붙임 : 주요 Q&A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주요 Q&A

①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의 특성상 연도말 발주해야 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해당 사업의 특성상 연도말까지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추진하거나 장기 계속계약을 검토

② '15년의 경우 이월예산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15년도의 경우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부득이 이월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15년도 한해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월조치
- '16년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조기 예산 배정 및 사업발주, 계약기간 적정산정 등 조치를 취하고,
 - 특히, 예산부서에는 최종 정리추경 전에 이월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가급적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로 처리

③ 신년 타종행사 등 연말연시에 걸쳐서 진행되는 행사의 계약 방법은?

- 연말연시 행사비의 경우 미리 명시이월로 편성하여 계약체결 및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해에 행사 종료 후 이월예산으로 집행

④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 「지방계약법」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의 경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 그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 예산 의결 전에 미리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예산의결 후 계약을 체결하면 됨

⑤ 중단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해 미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전의 사업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

-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용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의 방법으로 미리 수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나,
- 부득이 업체선정을 못한 경우 기존 계약업체와 1개월 이내의 수의 계약 체결을 검토하되, 이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개별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

⑥ 농작물 보험 등 12월분 경비를 1월에 실적을 집계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행방법은 ?

- 해당 경비의 특성상 전월분 사용실적에 따라 그 다음 달에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12월분에 대해서는
 - 계약의 경우라면 명시이월 등 예산이월의 방법으로, 계약 외의 경비라면 지난 회계연도 지출의 방법으로 집행

⑦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기존 계약의 기간을 연내로 조정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

- 모든 계약을 회계연도 내에서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 연도에 걸친 명시이월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일 회계연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부득이 계약기간 단축에 따라 1년 이내로 계약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근로자 동의필)에는 기 반영된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고, 향후 지급여부를 확인

⑧ 12월말까지 교부되지 않은 보조금의 처리방법은?

- 모든 보조금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와 협의시 연내 전액 교부를 요청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 예산에 편성된 보조금 중 최종 정리추경 편성시까지 자금교부가 안된 경우 이를 삭감하거나 자금없는 이월조치를 하고,
- 정리추경 편성 이후에 자금교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간주처리” 조치

⑨ 보조금 사업의 경우 12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해야 하는지?

- 조기 사업추진이 가능한 보조금 사업의 경우 12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세출과목으로 반납하되,
- 해당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연내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해에 정산하고, 반납금을 세입(그외 수입)처리하면 됨